

##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외국인의 재입국에 관한 추가적인 방역조치

2020년 7월 31일 현재

재입국(유사재입국, 이하 동일)으로 출국한 외국인(주 1)이 8월 5일 이후 재입국하는 경우 아래의 표 재입국일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재국·지역의 일본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 발급을 받고, 체재국·지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소정의 양식 또는 임의의 양식 {①인적사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②코로나19에 관한 검사증명내용 (검사수법 (소정의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채취검체, 검사법으로 제한), 검사결과, 검체접종일시, 검사결과결정년월일, 검사증명교부년월일), ③의료기관 등의 정보 (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주소, 의료기관 날인 (또는 의사 서명)) 등 전 항목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것}을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음성 증명(이하 <출국전 검사증명>)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전 검사증명은 일본에 도착 후 원본 혹은 그 사본을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와 함께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입국 심사관에게 이러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근거해 상륙 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또, 위변조된 출국전 검사증명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상륙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규정에 근거해 체류 자격 취소 절차 및 강제 퇴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일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한 외국인 (주 2)
8월 5일 및 동월 6일	①
8월 7일부터 동월 31일까지	①, ②
9월1일 이후	①, ②, ③

(주 1) 이하의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 특별영주자
- 「외교」 또는 「공용」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 2) 표 중 ①부터 ③까지의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체류지의 국가·지역이 상륙 거부 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해당 국가·지역으로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않고 인도적으로 배려해야 할 개별 사정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자
- ②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또는 페루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지역이 상륙 거부 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해당 국가·지역으로 출국한 자로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자 (이러한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영주자의 자녀를 포함함)
- ③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및 페루 이외의 국가·지역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해당 국가·지역이 상륙 거부 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해당 국가·지역으로 출국한 자로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자 (이러한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영주권자의 아이를 포함함)

연락처 :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관리부심판과

전화: (대표) 03-3580-4111 (내선4446·4447)

연락처 :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관리부심판과

전화: (대표) 03-3580-4111 (내선4446·4447)